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1. 19(목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장동기)

○ 직속기관(상하수도사업소)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,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동계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이용섭)

- 직속기관(상하수도사업소)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,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동계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
- O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중 "군청길 77"을 "후평길 74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